무 역 법

목 차

제2101조. 명 칭
제2102조. 의회의 의사표명서

제1절. 협상 및 기타 권한

제1부. 관세율 및 기타 무역 장벽

제2111조.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
제2112조. 무역장벽 및 기타 무역왜곡
제2113조. 전체적 협상 목표
제2114조. 부문별 협상 목표
제2114a조.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첨단과학기술제품의 무역에 관한 협상
제2114b조.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
제2114c조. 서비스 무역, 연방정책의 발전·조정·이행, 직원 지원 및 기타 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서비스 부분의 권한, 집행 기능
제2114d조. 대외수출요건, 축소 및 제거에 관한 협의 및 협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입의 제한과 배제, 유보조항, 적절한 보상권한
제2114e조. 첨단과학기술산업에 관한 협정의 협상
제2115조. 양자간 무역협정
제2116조.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제2117조. 국제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
제2118조. 공급에 대한 접근
제2119조. 스테이징 요건 및 라운딩 권한

제2부. 기타 권한

제2131조. GATT 개정에 관한 지출권한
제2132조. 국제수지에 관한 권한
제2133조. 보상권한
제2134조. 관세 협상을 위한 2년의 잔여 권한
제2135조. 종료 및 철회 권한
제2136조. 상호 비차별적 대우
제2137조. 국가안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품목의 유보
제2138조. 삭 제

제3부. 협상에 관한 공청회 및 자문

제2151조.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
제2152조. 행정부 및 기타 기관의 자문
제2153조. 공청회
제2154조. 제안의 필요조건
제2155조.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정보 및 자문

제4부. 미국무역대표부

제2171조. 구조, 기능, 권한 및 인원

제5부.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절차

제2191조.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 및 공산주의국가와의 상업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192조. 특정 행위를 불승인하는 결의안
제2193조. 1974년 무역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권한의 확대에 관한 결의안

제2194조. 의회절차에 관한 특별규칙

제6부. 의회의 보고서

제2211조.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
제2212조. 의회에 협정서의 제출
제2213조. 보고서

제7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제2231조. 명칭의 변경
제2232조. 독립예산 및 지출권한

제8부. 시장 장벽 및 불공정 무역행위의 확인

제2241조.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의 평가
제2242조.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의 확인

제2101조. 명 칭

이 법은 “1974년 무역법”으로서 인용될 수 있다.

제2102조. 의회의 의사표명서

이 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호이익을 제공하는 무역협정을 통하여

(1) 미국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촉진하고 개방 및 비차별 세계무역을 통하여 미국과 외국간의 경제적 관계의 강화

(2) 미국의 통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적 기회를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무역장벽의 적용, 축소, 제거

(3)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국제무역관계에서 공정과 형평의 성립

(4) 불공정 또는 부당한 수입경쟁에 대한 미국산업 및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고 국제무역흐름의 변화를 조정하기 위한 공동체, 근로자, 회사, 산업의 지원

(5) 비시장경제에서 미국통상을 위한 시장기회의 개방

(6) 미국 시장에서 저개발국가의 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의 제공

제1절. 협상 및 기타 권한

제1부. 관세율 및 기타무역장벽

제2111조.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
제2112조. 무역장벽 및 기타 무역왜곡
제2113조. 전체적 협상 목표
제2114조. 부문별 협상 목표
제2114a조.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첨단과학기술제품의 무역에 관한 협상 목표
제2114b조.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

제2114c조. 서비스 무역, 연방정책의 발전・조정・이행, 직원 지원 및 기타 지원
제2114d조. 대외수출요건, 축소 및 제거에 관한 협의 및 협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입의 제한과 배제, 유보조항, 적절한 보상권한
제2114e조. 첨단과학기술산업에 관한 협정의 협상
제2115조. 양자간 무역협정
제2116조.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제2117조. 국제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
제2118조. 공급에 대한 접근
제2119조. 스테이징 요건 및 라운딩 권한

제2111조.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

(a) 협정을 체결할 대통령의 권한, 현행의무의 변경 또는 유지

대통령이 외국 또는 미국의 현행관세 등의 수입제한이 미국의 대외무역을 제한하고 대외무역에 부당한 부담이 되는 이유로 인하여 이 법의 목적이 촉진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1975년 1월 3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외국 또는 중개자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현행관세의 변경 또는 유지, 현행 면세 또는 과세처우의 유지, 상계관세를 선언할 수 있다.

(b) 관세 축소의 권한에 대한 제한

(1)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선언은 1975년 1월 1일 현행 관세율보다 40% 정도 낮은 비율로 인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현행 관세율이 과세물품가격의 5% 정도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관세 증가의 권한에 대한 제한

대통령의 선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율 이상으로 관세율을 증가시키거나 부과하는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1975년 1월 1일에 효력이 생기는 미국의 관세율표 2단에 기재된 관세율보다 50% 정도 높은 세율

(2) 1975년 1월 1일 현행 관세율보다 높은 과세물품가격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세율

제2112조. 무역장벽 및 기타 무역왜곡

(a) 의회의 인정, 명령, 입법의 사전승인의 거부

의회는 국제무역장벽 (및 기타 국제무역왜곡)이 미국의 농업, 산업, 광업, 통상의 제품을 위한 대외시장의 성장을 축소시키고, 상호무역양허로 인한 계획된 상호이익을 감소시키고,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공급재의 공정하고 정당한 이용을 금지하고, 국가간의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무역발전을 방해한다고 결정한다. 대통령은 국제무역장벽 (및 기타 국제무역의 왜곡)의 적용, 축소, 제거를 위하여 (국제협정에 의한 미국권리의 충분한 행사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한다. 대통령이 국제무역장벽 (및 기타 국제무역왜곡)의 적용, 축소, 제거를 위한 상호관계의 근거를 규정한 기타 국가 및 중개자와의 무역협정

을 협상하기 위하여 이 조 제b항에 의한 수권의 이용을 주장한다. 이 조의 규정은 국제무역장벽 (또는 기타 국제무역왜곡)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에 관한 사전승인으로서 해석되지 아니한다.

(b) 무역협정 체결의 필수조건인 대통령의 결정, 이스라엘과의 무역

(1) 대통령이 외국 또는 미국의 국제무역장벽 (또는 기타 국제무역의 왜곡)이 미국의 대외무역을 제한하고 대외무역에 부당한 부담이 되거나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거나, 무역장벽의 부과로 인하여 부담, 제한, 악영향의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법의 목적이 이러한 이유로 촉진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1975년 1월 3일부터 13년의 기간 이내에 무역장벽 (또는 기타 무역왜곡)의 적용, 축소, 제거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무역장벽(또는 기타 무역왜곡)의 부과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무역협정을 외국 또는 중개자와 체결할 수 있다.

(2)
(A)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축소 또는 관세의 철폐를 규정한 무역협정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스라엘에 한하여 체결될 수 있다.

(B) 차별적 특혜관세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제품에 관한 특혜관세가 무역법 제2411조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권한에 의하여 미국정부에 의한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경우에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철폐 또는 축소를 규정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체결한 무역협정의 협상은 이스라엘과 제3국가간의 차별적 특혜관세협정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C) 이 조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c항 및 제e항 제1호의 요건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축소 및 철폐를 규정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스라엘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기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역혜택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축소 또는 철폐를 규정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무역혜택의 확대를 이유로 기타 국가에까지 확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A)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축소 또는 철폐를 규정한 무역협정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와 체결될 수 있다.

(ⅰ) 해당국가가 그 협정의 협상을 요청한 경우

(ⅱ) 대통령이 이 조 제e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기 전 60일 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Ⅰ) 상원의 세입위원회 및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협상에 관한 서면통지의 제공

(Ⅱ) 협정의 협상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

(B) 이 법 제2191조의 규정은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이 법 제2191조 제b항의 범위내에서) 이행법안에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ⅰ) 이행법안이 다음에 해당하는 무역협정을 승인하는 규정을 포함한 경우

(Ⅰ) 이스라엘 이외의 국가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

(Ⅱ)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철폐 또는 축소에 관하여 규정

(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A)의 규정의 요건이 협정의 협상에 관하여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Ⅱ) 상원의 세입위원회 또는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협정의 협상에 관한 (A)(ii)(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협정의 협상을 불승인한 경우

(C) (A)(ii)의 규정 및 (B)(ii)(Ⅱ)의 규정에 명시된 60일의 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관계없이 계산되어야 한다.

(i) 의회의 3일 이상의 휴회 또는 무기한 휴회를 이유로 의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한 날짜

(ii) 의회가 회기 중에 있지 아니한 때 (i)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요일 및 일요일

(c)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와 대통령의 협의

대통령이 국제무역장벽 (또는 기타 국제무역의 왜곡)의 적용, 축소, 철폐를 규정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그는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의 세입위원회, 무역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쟁점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 하원과 상원의 각 위원회 및 의회의 양원합동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 협의는 이 조 제d항 및 제e항의 규정에서 정한 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쟁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일이행법안에서 그 무역협정과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1개 이상의 다른 무역협정의 이행이 제안된 경우에 협의의 내용은 제안된 이행의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d) 협정서, 시행법안의 초안, 제안된 행정행위계획서의 의회에 대한 제출

대통령이 국제무역장벽 (또는 기타 국제무역의 왜곡)의 적용, 축소, 철폐

를 규정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는 (이 법 제2191조 제b항에서 명시한) 시행법안의 초안, 협정서, 협정의 이행을 제안한 행정행위계획서를 이 조 제e항에서 규정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은 이 조 제e항의 규정이 준수되고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 무역협정 발효의 필수조건인 단계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각 무역협정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및 그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효력이 생긴다.

(1)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 90일 이내에 협정 체결의 의도를 상원과 하원에 통지하고 그 이후에 지체없이 연방관보에 협정체결의도에 관한 통지를 공고할 경우

(2) 협정체결 후 대통령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서이외에 협정의 최종법률문서의 사본을 포함한 문서를 상원 및 하원에게 제출한 경우

(A) 시행법안의 초안 및 협정의 이행을 제안한 행정행위계획서, 이행법안과 제안된 행정행위가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현행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

(B) 협정이 미국의 통상이익을 제공하는 방법 및 시행법안과 제안된 행정행위가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서

(3) 이행법안이 법률로 제정된 경우

(f) 무역협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국가 또는 중개자에게 부과된 의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무역협정에 의하여 혜택을 받은 국가 또

는 중개자가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협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협정의 혜택과 의무가 그 협정의 당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취지의 협정에 관하여 제출된 행정행위계획서 및 이행법안을 통하여 의회에 권고할 수 있다. 그러한 적용이 협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협정의 혜택 및 의무가 협정의 모든 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협정에 관하여도 권고할 수 있다.

(g) 정 의

이 조에서

(1) "장벽"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 연방법전 제19편 제1401a조 또는 1402조의 규정에서 정한 관세평가에 기초한 국내판매가격[1)]

(B)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

(2) "왜곡"이라 함은 보조금을 포함한다.

(3) "국제무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

(B) 특히 투자가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 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1) ASP(American Selling Price)는 미국 수입관세의 일종인 미국 매가과세(賣價課稅) 방식의 하나이다. 수입품과 동일한 종류의 미국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그 수입품의 가격은 훨씬 비싸져서 미국시장에서 미국제품과의 경쟁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주는 비관세 장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13조. 전체적 협상 목표

이 법 제2111조 및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전체적 협상목표는 더 개방적이고 공정한 시장접근 및 무역 또는 통상을 왜곡하는 장치의 적용, 축소, 철폐를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최상의 실현가능성의 범위내에서 농업무역장벽 및 왜곡상태의 적용, 축소, 제거는 산업무역장벽 및 왜곡의 적용, 축소, 제거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제2114조. 부문별 협상 목표

(a) 공정한 경쟁기회의 획득

이 법 제2111조 및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주요협상목표는 최상의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조업부분의 적절한 제품 및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그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제무역의 장벽(관세를 포함) 및 기타 왜곡상태를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수입에 관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 기회와 동일하게 세계선진국에 미국수출에 관한 경쟁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b) 제조업부문의 적절한 제품에 기초한 협상의 이행

이 조 제a항에서 규정한 협상목표를 달성할 방법으로서 (미국의 농업, 산업, 광업 및 통상의 제품을 위한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하며, 공정 및 공평한 시장 기회의 발전과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세계무역을 통하여)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이익을 극대화할 목표와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협상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제조업 부문의 적절한 상품에 대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c) 제조업 부문의 적절한 제품의 확정

이 조 및 이 법 제2155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무장관, 농무장관, 노

동장관과 미국무역대표는 이 법 제2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무역협상 자문위원회와 협의 후에, 이해관계인 또는 비연방정부단체와 협의 후에 제조업 부분의 적절한 제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d) 무역협정에 의한 각 제품부문에서 협상목표가 성취된 방법에 관한 대통령의 분석

대통령이 1개 이상의 제품 부문에서의 경쟁기회가 이 법 제2111조 또는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무역협정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그는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협상목표가 1개 이상의 각 제품부문에서 협정에 의하여 성취된 범위에 관한 분석서 및 협정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14a조.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첨단기술과학제품에 관한 협상 목표

(a) 서비스 무역

(1) 총 칙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주요협상목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A) 내국민대우 및 해외시장에서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한을 거부하는 장벽을 포함한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 (특히 해외시장에서의 미국의 서비스부문 무역)의 장벽 또는 기타 왜곡상태의 축소 또는 제거

(B)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규칙의 발전

(ⅰ) 미국의 상업정책에 일치함

(ⅱ) 무역장벽 또는 무역왜곡의 축소 또는 제거 및 서비스에 관한 개방적 국제무역의 보장을 지원

(2) 국내 목표

제1호의 규정에 명시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 미국의 협상자는 적법한 건강 또는 안전, 필수적 안보, 환경, 소비자 또는 고용기회이익의 보호 및 이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미국의 적법한 국내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b) 해외직접투자

(1) 총 칙

이 법 제2112조에서 규정한 미국의 주요 협상 목표를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A) 해외 직접 투자의 인위적 또는 무역왜곡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하고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확대하며 시설에 관한 비합리적인 장벽의 축소

(B) 다음에 해당하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의 발전

(ⅰ)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한 자유 흐름의 보장을 지원

(ⅱ) 투자관련조치에 대한 무역 왜곡효과의 축소 또는 제거

(2) 국내 목표

제1호의 규정에 명시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에 미국의 협상자는 적법한 건강 또는 안전, 필수적 안보, 환경, 소비자 또는 고용기회이익의 보호 및 이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아니하는 미국의 적법한 국내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c) 첨단과학기술제품

미국의 주요협상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국제무역 및 첨단과학기술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투자에 관한 최대 개방 상태의 획득 및 유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첨단과학기술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정부의 개입의 범위 및 성질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 법 제2241조의 규정에서 확인된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관행의 실질적인 왜곡효과의 제거, 축소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의 취득

(A) 국제무역 또는 투자를 왜곡하는 대외적 산업정책

(B) 내국민대우를 거부하거나 기타 국내첨단과학기술산업의 이익을 위하여 달리 차별하는 조치

(C) (상표, 특허,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 재산권상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 행사,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 조치

(D) 주요제품의 국내시장의 접근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

(E) 반경쟁적 시장관행 또는 시장구조를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조치

(3) 외국 또는 증개자의 공식적 정책은 외국의 첨단과학기술제품 및 관련서비스의 정부조달 또는 사적조달을 촉진할 것이라는 의무이행약속의 획득

(4) 미국의 첨단과학기술제품 및 관련서비스의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기타 장벽의 축소 또는 철폐의 획득

(5) 내국민대우를 촉진하기 위한 의무이행약속의 획득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한 의무이행약속의 획득

(A) 재정참여 및 기술적·인력교환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이익의 분야에서 미국의 무역파트너의 정부단체, 기관, 회사와 미국의 정부단체, 기관, 회사간의 합동 과학적 협력 추구의 촉진

(B) 모든 참가자가 협력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보장

(7) 지적재산권과 사유정보상의 재산가치의 취득 및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최소한의 보호수단의 제공

(d) 장벽 및 기타 왜곡의 정의

이 조 제a항을 위하여 "서비스에 관한 국제무역의 장벽 또는 기타 왜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해외시장에서 시설에 대한 장벽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한을 포함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한

(A) 관계국가 또는 중개자 내부 또는 외부로의 정보의 이전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한

(B) 관계국가 또는 중개자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정보 처리시설의 사용에 대한 제한

제2114b조.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규정

(1) 상무장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이 계획된 서비스산업 발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적절한 기타 연방기관과의 협의하에 대외통상에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발전

(B) 개인서비스산업에 적절하고 개인서비스산업을 통합한 무역 정보를 포함하여 서비스에 적합한 행위 및 정부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할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C) 다음 각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미국 서비스 산업의 국제적 운영 및 경쟁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 및 분석

(ⅰ) 외국 및 미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정부의 정책

(ⅱ) 외국 및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연방, 주, 지방의 규정 및 무역에 대한 그 규정의 효과

(ⅲ) 서비스 부문의 수출 촉진 활동을 포함하여 대외 통상에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행 미국정책의 적정성

(ⅳ) 미국의 회사 및 수출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한 과세의 효과에 관한 특

별한 강화 및 서비스에 대한 과세처우

(ⅴ) 미국의 국제협정에 의한 서비스에 대한 처우

(ⅵ) 미국 회사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독점금지정책

(ⅶ) 미국의 국제협정상의 서비스에 대한 처우

(D) 산업전략 및 예상을 포함한 서비스관련쟁점 및 문제의 연구 및 분석에 관한 프로그램의 운영

(E) 국내 서비스 산업의 부문별 연구 수행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수집과 분석의 목적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상무부의 보고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 수집 및 보고는 비투자 서비스로부터 수익 및 투자로부터의 수익을 구별하여야 한다.

(3) 1986년부터 최소한 격년으로 장관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보고서는 보고서에 기재된 기간의 종결 후 120일 이내에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상무장관은 그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함에 의하여 이 항의 규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이 조에서 "서비스"라 함은 유형물 이외의 경제활동의 산물을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은행업, 보험업, 운송업, 우편 및 택배서비스업, 통신 및 데이터 처리업, 소매 및 도매무역업, 광고업, 회계업, 건축업, 디자인 및 토목공사업, 운영자문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연예업, 교육업, 건강관리업, 여행업을 포함하나 그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2114c조. 서비스 무역, 연방정책의 발전·조정·이행, 직원 지원 및 기타 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특별서비스 부문의 권한, 집행 기능

(1)
(A) 미국무역대표는 연방법전 제19편 제1872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기관의 무역단체 또는 그 단체의 소위원회를 통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미국 정책의 발전 (및 미국정책의 이행을 조정) 시켜야 한다.

(B)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미국정책의 효과적인 이행, 발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ⅰ) 서비스 부문 산업의 규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미국의 각 기관 또는 부처는 적절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부처 또는 기관이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미국 무역대표에게 자문하고 함께 업무의 수행

(Ⅰ) 해외시장에서 미국의 서비스 부문 이익을 제공하는 처우

(Ⅱ)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회사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의 주장

(ⅱ) 상무부는 미국무역대표가 요청한 적절한 기관과 함께 미국무역대표에 의한 서비스관련 쟁점에 관한 협상 및 서비스관련협정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타 지원 및 직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이 호의 어떤 규정도 특별 서비스 부문에 관한 현행 권한 또는 책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A) 대통령이 상당하다고 인정함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ⅰ) 비연방정부의 규제적 권한 또는 그들의 재화 및 서비스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의 이행 및 협상목표를 포함한 무역정책의 쟁점에 관하여 주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ⅱ)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연방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주된 협의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정부간 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ⅲ) 주정부, 지방정부,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요청, 자문, 지원에 의하여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한 미국정책에 대한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 이외의) 정보, 데이터, 분석자료를 주정부, 지방정부, 미국의 서비스산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114d조. 대외수출요건, 축소 및 철폐에 관한 협의 및 협상,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입에 관한 제한 및 배제, 유보조항, 적절한 보상 권한

(1) 연방법전 제19편 제18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미국무역대표가, 미국의 행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 또는 중개자의 수출이행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미국무역대표는 관계국가 또는 중개자와의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수출이행요건의 축소 및 제거를 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서 명시한 행위 이외에 미국무역대표는 수출이행요건의 대상인 미국제품의 진입 배제를 포함하여 그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기간 중에 해당국가 또는 중개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수입제한이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토지 또는 편의시설의 구매를 포함한) 해외직접투자가 1984년 10월 30일 전에 미국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행해져 왔음

(B) 1984년 10월 30일에 구속력이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서면약속이 미국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행해져 왔음

(4) 미국의 국제의무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행할 경우에는 보상은 이 법 제22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위한 보상의 제공에 관한 이 법 제2133조의 규정에 포함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미국무역대표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2114e조. 첨단과학기술산업에 관한 협정의 협상

대통령은 이 조의 목표 및 이 법 제2114a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15조. 양자간 무역 협정

대통령이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성장 및 완전고용이 효과적으로 촉진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 제2111조 및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목표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각 무역협정은 상호 유리한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2116조. 개발도상국과의 협정

이 법 제2111조 및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협상목표는 개발도상

국과 미국의 경제성장 및 상호시장기회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제2117조. 국제 긴급수입제한조치절차[2)]

(a)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 및 왜곡상태의 조화, 축소, 제거; 잠정적 조치의 사용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주요협상목표는 국제무역의 장벽 및 기타 왜곡상태의 조화, 축소, 제거를 위한 규칙 및 절차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를 획득하는 것이며, 국제무역의 확대로 인한 협상의 결과인 협정의 당사자가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조건에서 발생한 변화에 적응하기 용이한 잠정적 조치의 사용을 허용한다.

(b) 허용규정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절차를 성립시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 영향을 받는 수출국의 통지

(2) 국제협의

(3) 무역흐름의 변화에 대한 국제심사

(4) 변화의 결과로 인한 무역흐름의 조정행위

(5) 국제 중재

2) "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함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협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A) 보상의무 및 보복으로부터 특정조건에 의하여 당사자를 제외함

(B) 이해관계인의 참가 권리에 의하여 국내의 공공절차를 허용함

제2118조. 공급에 대한 접근

(a) 공정 및 공평한 접근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주요협상목표는 미국이 자기의 필요물품을 공급할 필수적 국내생산능력이 없거나, 국내생산능력을 쉽게 향상시킬 수 없으며, 미국의 경제적 요건에 중요한 통상품목의 공급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받기 위하여 미국은 외국 및 중개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b) 계속적인 이용가능성; 상호 양허; 유사한 거래 의무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요품목의 계속적인 이용가능성을 미국에 대하여 보장

(2) 미국의 상호양허 또는 유사한 거래의무 또는 그 양자 전부의 제공

제2119조. 스테이징 요건 및 라운딩 권한

(a) 관세율의 최대인하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협정에 따라 특정일에 효력이 생기는 어떤 품목에 관한 관세율의 총인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특정일에 효력이 생겼던 총인하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가격에 따른 3%의 인하 또는 총인하액의 10분의 1의 인하 중 큰 인하액이 그 품목에 관한 협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 법 제2111조 제a항 제2호에 의하여 선언된 첫 번째 인하의 효력일에 발효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금액에 상응하는 인하가 첫 번째 인하의 효력일 이후에 1년의 간격을 두고 효력이 생기는 경우

이 항의 규정은 관세율의 총인하액이 인하 이전의 관세율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b) 계산의 단순화

대통령이 어떤 행위가 품목에 부과한 관세액의 계산을 단순화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이 법 제2111조 제b항 또는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제한액과 두번째로 낮은 전체액수의 차이

(2) 가격에 따른 1%의 2분의 1

(c) 관세율 인하의 개시에 관한 10년의 기간

(1)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협정에 따라 어떤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인하는 그 품목에 관한 무역협정을 수행하도록 선언된 첫 번째 인하의 효력일 후 10년을 경과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한다.

(2) 인하의 일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 또는 행위로 인하여 인하의 일부에 대한 효력이 없는 기간 이후에 언제든지 품목에 관한 관세율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효과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 배제되어야 한다.

(A) 이 조 제a항 제2호에 명시된 1년의 간격

(B) 이 항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10년의 기간의 만료

제2부. 기타 권한

제2131조. GATT 개정에 관한 지출권한
제2132조. 국제수지에 관한 권한
제2133조. 보상권한
제2134조. 관세 협상을 위한 2년의 잔여 권한
제2135조. 종료 및 철회 권한
제2136조. 상호 비차별적 대우
제2137조. 국가안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품목의 유보
제2138조. 삭 제

제2131조. GATT 개정에 관한 지출권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계약 당사자의 비용을 분담하는 미국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총액을 해마다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여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제2132조. 국제수지에 관한 권한

(a) 기본적인 국제지급문제의 발생시 할당량을 통하여 수입에 관한 잠정적 제한 및 잠정적 수입과징금 부과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

기본적인 국제지급문제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수입품을 제한하는 특별수입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1)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의 해결

(2) 외환거래시장에서 긴급하고 심각한 달러의 가치절하의 방지

(3) 국제수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기타 국가와의 협력

대통령은 (의회법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언하여야 한다.

(A) 미국의 수입품에 관하여 (이미 부과된 것 이외에) 관세 형태로 가격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는 잠정적 수입 과징금

(B) 미국의 수입품목에 관한 할당량의 사용을 통한 잠정적 제한

(C) (A)의 규정에 명시된 잠정적 수입 과징금 및 (B)의 규정에서 명시한 잠정적 제한

(B)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 (및 (B)의 규정과 관련된 (C)의 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다.

(ⅰ) 미국이 당사자인 국제무역협정 또는 통화협정의 내용상 국제수지조치로서 할당량 부과를 허용한 경우

(ii) 기본적인 불균형이 (A) 또는 (C)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과징금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범위내에 있는 경우. (A) 또는 (C)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된 잠정적 수입 과징금은 일반관세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b) 미국의 국익에 상반될 때 부과되지 않는 수입 제한

대통령이 이 조 제a항에 의한 수입제한부과가 미국의 국익에 상반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선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지체없이 대통령의 결정을 의회에 통고

(2) 지체없이 이 법 제2211조 제a항에 의하여 지정된 의회의 공식자문단체를 소집하고 그 결정의 이유에 관하여 협의

(c) 수입자유화에 관한 대통령의 선언

대통령이 기본적인 국제지급문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수입품을 증가시킬 특별 수입조치를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1) 통계국에 의하여 보고된 수입품의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 미국의 지속적이고 큰 무역수지흑자의 처리

(2) 외환거래시장에서 달러의 실질적인 평가의 금지

대통령은 (의회법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50일의 기간 이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A) 품목에 관한 관세율을 (가격에 따라 5%이하로) 잠정적 인하

(B) 수입제한에 의하여 수입될 수 있는 품목의 수량이나 액수의 잠정적 증가 또는 수입제한의 잠정적 중지

이 항에 따라 선언된 수입자유화행위는 해당제품의 범위에 광범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수입자유화행위로 인하여 농업·광업·어업·통상을 포함하는 국내산업에서 근로자 또는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또는 달리 국익에 상반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관한 이항에 의한 조치를 공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d) 수입제한행위의 비차별적 대우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된 수입제한행위는 비차별대우의 원칙과 합치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이 조 제a항 (B)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할당량은 여러 국가가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했던 가능성과 밀접하게 미국과의 무역분배를 목표로 하는 근거 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조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큰 국제수지흑자를 나타내는 1개 이상의 국가에 대하여 수입제한행위를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수지조정절차의 개정의 일부인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규칙이 발효한 후에 언제든지 제2호에 명시된 면제권한은 새로운 국제규칙과 합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 대통령이 적자국가와 흑자국가간 국제수지조정책임의 공평한 분배에 관한 협정의 범위내에서 국제수지조정조치로서 수량적 제한에 갈음하는 추징금의 사용의 허용 (및 과징금 사용을 총괄하는 규칙 제정)을 목표로 하는 국

제협정의 개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판단이다.

(e) 수입제한행위의 광범위하고 동일한 적용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수입제한행위는 제품의 범위에 광범위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특정 품목이 미국경제의 필요를 이유로 수입제한행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이 조의 목적과 합치하여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예외는 수입재화 및 기타 유사한 요소의 공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입의 국내공급의 불능에 제한되어야 한다. 동일성 예외는 수입제한행위가 수입제한의 대상인 품목, 운송중인 재화, 계약에 구속된 재화와 관련하여 이 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불필요하거나 비효과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수입제한행위의 권한 또는 제품의 적용범위에 관한 예외결정은 수입경쟁으로부터 개별적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f) 수량적 제한

품목의 수량 또는 액수나 양자 전체에 관한 이 조 제a항 (B) 또는 (C)의 규정에 따라 선언된 수량적 제한에 대하여

(1) 대통령이 정한 가장 최근 기간 중에 그 제한의 적용을 받는 외국에서 미국이 수입한 품목의 수량 또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 또는 금액의 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2) 해당품목 및 국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국내소비에 관한 대표적인 기간의 종결 이후의 증가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g) 선언의 중지, 변경, 종료

대통령은 의회의 후속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또는 최초의 150일의 효

력일 중에 언제든지 이 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선언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중지, 변경, 종료할 수 있다.

(h) 관세양허의 종료

관세양허의 종료의 권한을 가진 법률의 어떤 규정도 미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제2133조. 보상권한

(a) 새로운 양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1) 이 법 제3절의 규정 또는 이 법 제2절 제2부의 규정, 이 법 제4절 제2부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행위

(2) 1988년 8월 23일 이후 확정된 사법적 또는 행정적 관세

관세 또는 기타 수입 제한을 증가시키거나 부과할 경우에 대통령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A) 상호간 이익이 되는 양허의 일반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상으로서 새로운 양허를 할 목적으로 외국 또는 중개자와 무역협정의 체결

(B) 대통령이 그 협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결정한 현행 면세 또는 관세 처우의 지속 또는 현행 관세의 변경 또는 유지의 선언

(b) 관세율의 인하

(1) 어떤 선언도 현행관세율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로 관세율을 인하하는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유효한 관세율이 언제든지 연방법전 제19편 제2902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 제a항에 따라 행해진 선언은 동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된 각 단계의 관세율을 그 관세율보다 30% 낮게 규정할 수 있으며, 동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단계로서 선언된 관세율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최종관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그 행위로 인하여 어떤 품목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액의 계산이 간단해질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적은 액수는 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

(A) 그 제한액과 두 번째로 낮은 총액간의 차이

(B) 가격에 따라 1%의 2분의 1

(4)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허는 이 법 제2253조 제e항 및 제225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행위에 적용가능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하표에 따라 축소되거나 종료되어야 한다.

(c) 무역양허에 대한 과거 위반행위의 고려

외국 또는 중개자와의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협정의 체결 전에 대통령은 그 국가 또는 중개가자 미국에 유리한 무역양허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이 미국의 행위나 그 국가 또는 중개자에 의하여 적절하게 상쇄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d) 보상으로서 새로운 양허를 부여하는 권한인 무역협정에 관한 기본적 권한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전 제19편 제29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은 그 권한이 종료할 때까지 이 조의 범위내에서 보상으로서 새로운 양허를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e) 권한의 적용에 필요한 국제 의무 결정

대통령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된 행위가 미국의 국제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 법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행위라는 이유로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134조. 관세 협상을 위한 2년의 잔여기간

(a) 무역협정

대통령이 현행관세 또는 외국이나 미국의 기타 수입제한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무역을 제한하고 부당한 부담을 지우며, 이 법의 목적이 대외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중개자와 무역협정의 체결

(2) 현행 관세의 변경 또는 지속, 현행 면세 또는 과세 처우의 지속, 무역협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결정한 기타 추가 관세의 공포

(b) 관세의 인하 또는 면세나 과세 처우 지속의 대상인 수입품목의 최대 수량

1년의 기간이내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은 수입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12개월 동안의 미국 수입 금액의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에 관한 관세의 인하, 면세 또는 과세 처우의 지속에 관하

여 규정하지 못한다.

(c) 관세의 최대 인하

(1) 어떤 공포도 현행관세율의 80% 이하인 관세율로 축소하는 이 조 제a항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어떤 공포도 그 품목과 관련하여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최대권한이 행사되었던 경우에는 해당관세율 이상 또는 이하의 관세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유효한 관세율이 언제든지 이 법 제2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공포는 그 관세율의 20% 이하로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된 각 단계의 관세율의 인하를 규정하고 제2호의 규정의 제한에 따라야 하며, 이 법 제2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단계로서 공포된 관세율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최종관세율을 규정할 수 있다.

(4) 대통령이 그 행위로 인하여 해당품목에 관하여 부과된 관세액의 계산이 간단할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은 이 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제한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A) 제한액 및 두번째로 낮은 총 금액간의 차이

(B) 가격에 따라 1%의 2분의 1

(d) 권한에 대한 2년의 기간

2년의 기간 중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는 협정은 이 법

제2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될 수 있는 협정의 기간이 종결된 이후 지체 없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2135조. 종료 및 철회 권한

(a) 협정에 명시된 기간의 종결시에 종료 또는 철회를 위한 권한의 부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무역 협정은 협정에 명시된 기간의 종결시에 정당한 통고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종료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의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협정이 명시된 기간의 종결시에 종료되거나 철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통지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철회되어야 한다.

(b) 언제든지 선언을 종료할 권한

대통령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선언을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

(c) 외국 또는 중개자의 무역과 관련된 의무의 철회, 중지, 변경에 따라 인상된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

이 법, 연방법전 제19편 제1821조 또는 동편 제1351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무역협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의한 미국의 행위가 외국 또는 중개자의 무역에 관한 의무를 철회, 중지, 변경할 경우에 대통령은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간 내 언제든지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된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을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1975년 1월 1일에 유효하거나 1975년 1월 1일 현행관세율 이상에 해당하는 종가의 20% 중 높은 것을 미국의 관세표 제2단에 기재된 관세율의 50% 이상으로 현행관세의 인상을 이 항에 의하여 선언하지 못한다.

(d) 보복 권한

외국 또는 중개자가 적당한 보상없이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협정의무의 적용을 철회, 중지, 변경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무역협정에 의하여 미국에 부여된 권리에 따라서 (미국의 국제수지를 포함한) 미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그 외국 또는 중개자에게 혜택을 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무역협정의무의 적용의 철회, 중지, 변경

(2) 외국 또는 중개자로부터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기타 수입 제한, 인상된 관세를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언

(e) 협정의 종결 또는 협정의 철회 후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의 지속

이 법, 연방법전 제19편 제1821조, 동편 제1351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무역협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은 협정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종료 및 미국의 협정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종료 또는 철회된 이후 1년 이내에는 유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협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료 또는 철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료 또는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던 모든 품목에 관한 적절한 관세율에 대한 대통령의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f) 공청회

이 조 제b항, 제c항, 제d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전에 대통령은 이해관계인이 출석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는 과정인 공청회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사전 공청회가 신속한 행위의 필요성을 이유로 국내이익에 반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행위 이후에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36조. 상호 비차별적 대우

(a) 직접적 및 간접적 수입

이 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언한 수입 제한 또는 면세처우 또는 관세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수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제품에 적용하여야 한다.

(b) 주요산업국가가 미국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

대통령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모든 협상의 체결 후 또는 1975년 1월 3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중 빠른 시기에 어떤 주요산업국가가 미국에서 그 국가의 통상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이 양허한 경쟁적 기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그 국가에서 미국의 통상에 관하여 경쟁적 기회를 제공할 것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무역협정에 의하여 양허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주요산업국가

이 조에서 "주요산업국가"라 함은 캐나다, 유럽경제공동체, 그 공동체의 개별적 회원국가, 일본,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이 지정한 기타 다른 외국을 말한다.

제2137조. 국가안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품목의 유보

(a) 국가안보의 고려

대통령이 관세 또는 기타 수입제한의 축소나 폐지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품목에 관한 기타 수입제한 또는 관세의 축소 또는 폐지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언하지 못한다.

(b) 기타 법률에 의한 행위

이 법 제2253조, 연방법전 제1862조 또는 제19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가 어떤 품목에 관하여 유효한 경우에 대통령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축소 또는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협상 (및 이 법 제2132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서 그 품목을 유보하여야 한다.

(A) 해당품목에 관한 관세

(B) 이 법 제2253조, 연방법전 제1862조 또는 제198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C) 기타 수입제한, (B)의 규정에 명시된 수입제한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의 제거

대통령은 이 법 제2151조, 제2152조, 제2153조의 규정에 포함된 문제와 관련되고 그 조항에 의하여 이용가능한 정보 및 자문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한 다른 품목도 유보하여야 한다.

제2138조. 삭 제

제3부. 협상에 관한 공청회 및 자문

제2151조.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
제2152조. 행정부 및 기타 기관의 자문

제2153조. 공청회
제2154조. 제안의 필요조건
제2155조.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정보 및 자문

제2151조.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

(a) 행위의 고려대상인 품목의 목록

(1) 이 법 제2133조의 규정,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 제a항 또는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수시로 미국 관세의 변경 또는 유지, 미국의 면세 또는 과세 처우의 유지, 추가 관세가 고려되는 품목의 목록을 국제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관세율의 인하 또는 인상의 고려가 관련된 품목의 경우에 그 목록은 충분히 고려되어 이 절의 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수시로 변경이 고려되는 비관세문제의 목록을 위원회에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b) 위원회의 대통령에 대한 자문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목록의 경우에는 그 목록의 수령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는 각 품목 또는 비관세 문제에 관하여, 동종 제조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품목 및 소비자에 관한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의 변경에 대하여 가능한 경제적 효과에 관한 판단을 대통령에게 자문하여야 하면, 자문의 목적은 제조업・농업・광업・어업・서비스업・지적재산업・투자업・노동업・소비자업과 관련된 부분과 같이 미국의 이익 변경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판단을 하는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자문의 내용에는 품목에 관한 관세율의 인

하가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 제a항 제3호 (A)의 규정에 정해진 최소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유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포함할 수 있다.

(c) 대통령 또는 무역대표가 요청한 추가조사 및 보고

이 법 제2133조 또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시장에서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에 관한 우선순위와 같은) 기타 문제, 우선사항, 무역정책을 발전시킬 방법을 결정할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미국의 국내근로자, 산업 또는 부문, 구매자, 품목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국제무역의 장벽 (또는 기타 왜곡)의 변경의 결과와 같은 문제에 관하여 대통령 또는 미국 무역대표가 요청한 조사 및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d)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의 조치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준비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1) 쟁점이 되는 품목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해외산업 및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 품목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간 경쟁의 효과, 원인, 조건의 조사

(2) 관련국내산업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사용, 이익수준, 고용을 고려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품목이나 서비스의 생산, 거래 및 소비의 분석 및 가격・임금・판매・재고품・요구형태・자본투자・장비의 노후화・제품의 다양화를 포함하여 관련성이 인정된 산업에서의 기타 다른 경제요소의 분석

(3) 고용・이익수준・생산시설의 사용에 관한 중요한 변화의 범위 및 성질의 명시, 관련국내산업 또는 부문의 경쟁력에 관한 변화의 가능성 또는 변화로

인한 전체적 영향의 명시, 관련국내산업 또는 부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믿는 기타 조건의 명시

(4) 보장이 인정된 경우에 (해외 공급국가가 지급한 실제임금의 연구를 포함한) 미국의 해당 직원 및 미국 정부의 해외시설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미국의 제조업·농업·광업·어업·노동업·소비자업·서비스업·지적재산업·투자업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제안된 변화의 특별 연구의 이행

(e) 공청회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합리적인 통지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52조. 행정부 및 기타 기관의 자문

이 법 제2133조 또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이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은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타 기관이나 미국무역대표, 농무부·상무부·국방부·내무부·노동부·주로부터 무역협정에 관한 정보 및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그 자문의 내용은 1979년 재조직 계획 제3호, 집행명령 제12188호, 이 법 제2171조 제c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

제2153조. 공청회

(a) 의견 제출의 기회

이 법 제2133조 또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이 법 제2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목록상의 품목, 목록화 되어야 하는 품목 또는 문제, 미국이 추구하는 양허, 제

안된 무역협정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통령은 기관 또는 관계부처의 위원회를 지정하여 합리적인 통지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공청회의 운영을 총괄할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에는 무역정책의 발전 및 우선사항에 그 절차를 적용되어야 한다.

(b) 청문회의 요약

공청회를 개최하는 조직은 대통령에게 공청회의 요약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54조. 제안의 필요조건

(a) 이 법 제2133조의 규정 또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추구하기 위한 협상에서 대통령은 이 법 제2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품목에 관한 청문의 기회를 통하여 청문의 요약문을 받은 후에 한하여 해당 품목 또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에 포함된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국제무역장벽 (또는 국제무역의 기타 왜곡상태)의 변경 또는 유지, 미국의 관세·수입제한, 미국의 면세 또는 과세 처우의 유지, 추가 관세·수입제한·국제무역장벽 (또는 기타 왜곡상태)을 부과하기 위한 공식적 제안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법 제2151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해당품목에 관한 자문을 받은 후 또는 동조에 규정한 6개월 또는 90일의 기간 만료 후 중 먼저 발생한 날에 이 법 제2151조 제a항에 의하여 공고되고 제공된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관하여 미국 관세의 변경 또는 유지, 미국의 면세 또는 과세 처우의 유지, 추가 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b)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조 제a항에 명시한 제안을 이행했는지 여부의 결정 및 그 제안의 성질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조직이 수입에 민감

하거나 잠재적으로 민감한 품목 또는 국내산업에 관하여 제출한 보고서 또는 제공한 정보, 자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

(2) 이 법 제2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

(3) 이 법 제2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조직

제2155조. 사적 및 공적 부문의 정보 및 자문

(a) 총 칙

(1) 대통령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사적 부문 및 비연방정부 부문의 대표적인 기관에게 정보 및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A) 이 절의 규정 또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전의 협상목표 및 교섭 지위

(B) 미국이 당사자인 분쟁해결패널절차의 준비를 포함하여 협정이 체결된 때 무역협정의 운영

(C) 1979년 재정리 계획 제3호, 행정명령 제12188호, 행위에 관한 우선조항에 명시된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무역정책의 운영, 이행, 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문제

최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상의 개시 전에 협상목표에 관한 정보 및 자문을 구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미국의 전반적인 현행 무역정책에 관한 사적 부문 및 비연방정

부 부문의 대표적인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내용에는 무역정책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다자간 및 양자간 주요 무역협상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이행되는 과정

(B) 최근 체결된 다자간 및 양자간 무역협정 및 무역분쟁해결의 이행, 운영 및 효과

(C) 미국의 무역법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 및 무역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의 효과

(D) 적절한 정책 반응이 발전되어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의 중요한 발전

(3) 대통령은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하여야 하는 협상지위 및 각 주요 협상목표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통하여 얻은 자문을 고려하여야 한다.

(b)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 위원회

(1) 대통령은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45인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며, 비연방정부·노동업·산업·농업·소기업·서비스 산업·소매업·비정부 환경보존기구·소비자 이익단체의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특히 무역의 영향을 받는 부문 및 단체와 관련하여 경제단체 및 주요부문을 광범위하게 대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미국무역대표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4년 또는 위원회의 만료예정일까지의 기간이어야 한다. 개인은 일정한 기간중에 위원회에 재임명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명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행해져야 한다.

(2) 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의 요구 또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구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3) 미국무역대표는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행정서비스, 인원, 정보, 직원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일반정책, 부문적 또는 기능적 자문 위원회

(1) 대통령은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자문을 제공받기 위하여 산업·노동업·농업·서비스업·투자업·방위산업·기타 이익에 관한 개별적 일반 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업·노동업·농업·서비스업·투자업·방위산업·기타 이익을 각각 대표하여야 하며, 미국무역대표·통상장관·상무장관·국방장관·노동장관·농무장관·재무장관·기타 행정부의 장관에 의하여 적절히 조직되어야 한다. 미국무역대표가 해당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은 적절한 분야별 또는 기능적 자문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그 위원회는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관계부문 또는 기능적 분야에서의 (소기업 이익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업·산업·노동업·농업을 대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를 조직하는 경우에 미국무역대표, 상무장관, 노동장관, 농무장관, 재무장관, 기타 행정부 장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A) 이해관계를 가진 사적 단체와의 협의 및

(B)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고려

(ⅰ) 국제무역에서 미국 산업 및 농업과 외국 기업간의 실제적·잠재적 경쟁

형태

(ii) 비관세장벽 및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왜곡상태의 특징

(iii) 자문위원회의 수에 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

(iv) 각 위원회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

(v) 각 부문별 위원회의 경우에 각 위원회가 포함하는 생산라인의 합리적인 관련성

(3) 대통령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여야 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연방정부 이익을 대표할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i)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 및

(ii)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책자문

(B) 비연방정부 이익대표자와 미국의 무역대표가 합의한 후에 비연방정부 이익대표자를 (A)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비연방정부 이익대표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의 구성원의 임명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행해져야 한다.

(d) 정책, 기술적, 기타 자문 및 정보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 농무장관, 상무장관, 노동장관, 국방장관, 기타 행정부 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정책자문, 기술적 자문 및 정보,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 협상 종결시 자문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가 대표하는 부문 또는 분야가 영향을 받는 경우에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 각각의 해당 정책자문위원회, 각각의 부문별 또는 기능적 자문위원회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각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의 종결시에 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미국무역대표, 의회, 대통령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방법전 제19편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무역협정에 적용되는 각 보고서는 그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를 연방법전 제19편 제3805조 제a항 제1호(A)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의회에 통지한 날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2)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 및 각각의 해당 정책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그 협정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고 연방법전 제19편 제3802조에 명시한 전반적인 주요 협상 목표를 적절히 달성했는지의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부문별 또는 기능별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그 협정이 기능적 분야 또는 부문내에서 형평성과 호혜주의를 규정했는지의 여부에 관한 자문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f) 연방자문위원회법의 적용

연방자문위원회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

회

(2)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될 수 있는 기타 자문위원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A) 이 조 제b항 및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회의, 공고, 공공참여 및 문서의 공공이용과 관련된) 연방자문위원회법 제10조 제a항 및 제b항, 제11조의 규정의 필요요건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그 회의는 무역정책, 우선사항, 협상목표, 이 조 제a항에 명시한 쟁점에 관한 협상 지위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진정으로 타협한 공개된 쟁점과 관련될 우려가 있고, 그 회의가 특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총회, 이 조 제b항 및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기타 단체를 소집할 수 있다고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지명인이 결정한 때 및 그 범위내에 한한다.

(B) 연방자문위원회법 제14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b항 또는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지명인이 임의로 위원회의 설치일로부터 4년의 기간의 만료전에 종료할 수 있다.

(g) 무역비밀 및 비밀보장된 정보

(1) 면책특권이 있거나 비밀이 보장되고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의 공직자 또는 근로자에게 사적부문 또는 비연방정부가 비밀로 제출한 무역비밀 및 상업적·재정적 정보는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다.

(A) 미국무역대표가 지명한 미국의 공무원 및 근로자

(B) 이 법 제2211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식적인 고문으로서 지명되거나 이 법 제2211조 제b항 제3호 (A)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

원장이 지명한 상원의 세입위원회 및 하원의 세입위원회의 의원과 동조 제b항 제3호 (A)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각 위원회의 직원

(C) 상원 또는 하원의 위원회의 의원, 이 법 제2211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문으로서 지명되거나 동조 제b항 제3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의회의 합동위원회의 위원, 이 법 제2211조 제b항 제3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위원회의 직원, 다만, 위원회의 입법적 권한 내에서 무역정책쟁점 또는 협상과 관련된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나 무역비밀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정보 및 미국의 공무원 또는 근로자,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대하여 사적 부문 또는 비연방정부가 비밀로 제출한 자문은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다.

(A) 제1호에 규정한 개인

(B)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적절한 자문위원회

(3)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자문위원회,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공직자 또는 근로자가 비밀로 제출한 정보는 무역대표, 상무장관, 노동장관, 국방장관, 농무장관, 기타 적절한 행정부 장관이 제정한 규칙에 따라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관련자문위원회와 협의 후에 공개될 수 있다. 그 규칙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무역정책, 우선사항, 미국 협상목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는 위원회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또는 비밀보장이 요구되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그 규칙은 이 조 제a항에 명시한 쟁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와 자문위원회 구성원에 의한 중요한 협의를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h) 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

미국무역대표, 상무장관, 노동장관, 국방장관, 농무장관, 재무장관, 기타 적절한 행정부 장관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로서 이 조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 대한 지원 및 행정 서비스, 직원, 정보, 인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i) 자문위원회와의 협의, 절차, 위원회의 자문 또는 권고에 대한 불수용

지속적으로 적절한 근거 위에서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얻고 자문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기 위하여 미국무역대표는 상무장관, 노동장관, 농무장관, 재무장관과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협의에는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자문 위원회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쟁점 및 발전

(2) 전반적인 협상 목표 및 미국과 기타 당사자의 지위

미국무역대표는 자문위원회의 권고 또는 자문에 구속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권고와 다른 중요한 변경은 자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와 협의 중에 자문위원회가 제공한 정보 및 자문에 관한 정보는 의회의 고문들이 이용하여야 한다.

(j) 사적인 기구 또는 단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 이외에, 대통령은 비공식적 근거위에서 적시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근거 위에서 이 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가 제출된 경우

에는)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쟁점에 관한 정책권고 이외에 통계, 데이터, 기타 무역정보를 정부, 노동부문, 산업부분, 농업부문, 소기업, 서비스 산업, 소비자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적기구 또는 단체가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k)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의 참여 범위

이 조에 포함된 어떤 규정도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명시한 쟁점의 협상에 개인의 직접적인 참여를 허가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최대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조 제b항과 제c항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원 및 기타 적절한 당사자는 협상 전 또는 협상 중에 통지를 박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들은 협상대표단의 고문으로서 지명될 수 있으며, 미국대표단의 단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범위내에서 국제회의에 참여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그들은 미국을 위하여 발언 또는 협상하지 못한다.

(l) 농무부가 설치한 자문위원회

1977년 식량농업법 제18편의 규정은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문위원회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m) "비연방 정부"의 정의

이 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비연방정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미국의 주, 준주 또는 부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의 정치적 구역

(2)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주체의 기관 또는 중개자

제4부. 미국무역대표부

제2171조. 구조, 기능, 권한 및 인원

제2171조. 구조, 기능, 권한 및 인원

(a) 대통령 직무실내에 설치

대통령 직무실내에 미국무역대표부를 설치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대표부라 한다)

(b) 미국 무역대표, 미국무역부대표

(1) 대표부는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미국무역대표가 지휘하여야 한다. 상원의 규칙제정권한의 행사로서 비준을 위하여 상원에 제출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미국무역대표의 임명은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미국무역대표는 대통령의 자의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업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동일한 수당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며 특명 전권대사의 지위를 가진다.

(2) 상원의 자문 및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1인의 농업협상대표 및 3인의 미국무역부대표가 대표부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상원의 규칙제정권한의 행사로서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상원에 제출되고 위원회에 회부된 미국무역부대표 또는 농업협상대표의 임명은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각각의 미국무역부대표 및 농업협상대표는 대통령 자의에 의하여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사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다.

(3) 미국과의 무역 협상 또는 무역분쟁에서 (연방법전 제18편 제207조 제f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의한) 외국주체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거나 지원하거나 자

문했던 자는 미국무역대표 또는 미국무역부대표로서 임명되지 못한다.

(c) 미국무역대표 및 미국무역부대표의 의무

(1) 미국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상품 쟁점 및 국제무역정책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직접투자문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국제무역정책의 발전, 조정, 이행을 위한 주요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B) 국제무역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책임고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국제무역에 관한 미국정부의 기타정책의 영향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C) 미국이 참여하는 직접투자협상 및 상품협상, 세계무역기구의 보호 아래 고려되는 쟁점에 관한 모든 협상을 포함하여 국제무역협상행위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미국의 협상대표가 되어야 한다.

(D) 세계무역기구의 보호아래 고려되는 쟁점을 포함하여 국제무역정책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기타 법률과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세계무역기능의 행사로 발생한 정책의 기본적 쟁점 및 해석에 관하여 기관 및 부처에 대한 정책지침을 조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E) 국제무역에 관하여 대통령의 주대변인으로서 행위하여야 한다.

(F) 무역협정프로그램에 관하여 대통령 및 의회에 직접 보고하고 무역협정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G) 비관세 국제무역장벽, 국제상품협정, 기타 무역협정프로그램에 관한 기타 쟁점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H) (C)의 규정 및 (F)의 규정에 명시된 쟁점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I) 연방법전 제19편 제1872조 제a항에 의하여 설치된 관계부처간의 무역조직의 의장이 되어야 하며 의장의 역할 이행을 위하여 그 조직과 협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J) 1988년 8월 23일 현재 미국 무역대표에게 위임된 기능이외에 대통령이 지시한 기타 기능에 관하여 책임져야 한다.

(2) 미국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이다.

(A) 국제무역쟁점을 지배하는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관한 자문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의 선임대표가 되어야 한다.

(B) 국제무역이 주요 쟁점이 되는 기타 국제회의 및 모든 경제 정상회담의 참가자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3) 미국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A) 미국무역대표가 지명한 대표부의 공직자 및 종업원에게 무역대표의 역할, 권한,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B) 미국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대표부의 공직자 및 종업원에게 무역대표의 역할, 권한, 의무에 대한 승계적인 재위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각각의 미국무역부대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역협상행위가 그의 주요업무가 되며 미국무역대표가 지시한 기타 다른 기능을 하여야 한다.

(5) 농업협상대표의 주요 역할은 무역협상을 이행하고 미국의 농업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무역협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농업협상대표는 미국의 농업이익을 위하여 강력한 주장을 하여야 한다. 농업협상대표는 미국무역대표가 지시한 기타 기능을 이행하여야 한다.

(d) 불공정한 무역관행, 대표의 추가적 의무, 자문위원회, 정의

(1)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하여 이 조 제c항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특정 불공정무역관행사건에 대한 관계부처간 공급원의 적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B) 행위에 관하여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방부처 또는 기관에 이 법 제2241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에 명시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이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미국무역대표가 알고 있는 각 관행, 정책, 행위를 확인하고 문의하여야 한다.

(ⅰ) 무역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고 미국통상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침 또는

(ⅱ) 무역법에 의하여 절차를 개시하기에는 작거나 재정적으로 불충분한 국내회사 또는 산업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침

(C) 미국협상목표를 성취할 수 없도록 미국통상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D)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경우에 미국법에 의하여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하는 관행 및 미국정부정책을 2년에 한번씩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수행할 목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인 무역대표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각의 기관장이 임명한 선임대표로 구성된 관계부처간의 불공정무역관행 자문위원회는 미국무역대표를 지원하여야 한다.

(A) 주정부의 부처의 경제 및 기업업무국

(B) 상무부의 국내 및 해외 통상국

(C) 상무부의 (국내 및 해외 통상국 이외의) 국제무역집행국

(D) 농무부의 해외농업국

미국무역대표는 제1호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 항에서 "불공정 무역관행"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정책, 관행을 말한다.

(A) 연방법전 제19편 제16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상계관세와 관련된 보조금의 제공

(B) 연방법전 제19편 제16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반덤핑 관세와 관련된 외국의 상품의 매매 또는 매매와 유사한 결과 발생

(C) 연방법전 제19편 제1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의 불법적인 품목의 수입과 관련된 불공정 경쟁방법 또는 불공정 행위

(D) 이 법 제3절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종류의 행위, 정책, 관행

(e) 미국무역대표의 권한

미국무역대표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무원 분류법에 의하여 필요한 공직자 및 종업원을 선출, 임명, 고용하고 그들의 보수를 확정하고 그들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20인 이하의 개인은 연방법전 제5편 제5314조의 고위직 공무원 보수표 4급에 해당하는 보수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보수 또는 고용을 규정한 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고용

(2) 연방법전 제5편 제3109조에 따라 전문가 및 상담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동편 제5332조에서 규정한 GS-18단계의 최대보수율을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각 해당일에 고용되었던 개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전문가나 상담자가 자택 또는 영업장소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간헐적으로 고용되었던 정부공무원에 대하여 동편 제5703조에 의하여 수권된 비율로 생활비에 갈음하여 일당으로 여행경비를 해당자에게 지급

(3) 미국무역대표의 기능, 권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의 공포

(4) 기타 연방기관의 서비스, 인원, 편의시설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용

(5) 계약, 임대차, 협력 협정, 무역대표부의 업무 이행에 필요한 기타 거래의 체결과 이행 및 미국의 기관 또는 중개자와 함께 또는 공인이나 사인, 기업, 협회, 회사, 기관과 함께 미국무역대표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조건의 체결 및 이행

(6) 연방법전 제31편 제13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보상되지 않는

서비스의 승인

(7) 사법적으로 통지되어야 하는 공식적 인장의 채택

(8) 연방여행규정 또는 (생계비용에 갈음하는 일당 수당비율과 관련된) 연방법전 제5편 제57장 제1절의 규정과 상관없이 공식적인 여행에 관하여 승인된 비용의 지급

(9) 대표부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 부동산 유증, 물적재산 및 인적재산의 유증의 수용, 소유, 관리 및 이용

(10)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2인용 자동차의 구입 또는 교환에 의한 취득, 다만, 9천 5백 달러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취득할 수 없다.

(11) 법률에 의하여 수권된 경우에 원가로 일반인에게 문서의 사본의 제공, 다만, 그렇게 수령한 기금은 지출금액을 대변에 기입하여야 하며 지출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f) 연방기관의 사용

미국무역대표는 미국의 무역협정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 및 집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무역대표의 역할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방기관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방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g) 지출 권한

(1)
(A) 무역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지출권한을 가진다.

(ⅰ) 2003 회계연도 동안 3천 2백 3십만 달러

(ⅱ) 2004 회계연도 동안 3천 3백 1십만 8천 달러

(B) 회계연도 중에 (A)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ⅰ) 대표부의 접대 및 대표비용을 위하여 9만 8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ⅱ) 100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다 소비할 때까지 이용가능한 금액

(2) 1982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각 회계연도 중에, 1970년 연방공무원급여비교법에 따라서 이행된 급여율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는 추가적 총액을 대표부의 공직자 및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권한을 가진다.

(3) 대통령이 회계연도 중에 미국정부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국무역대표는 하원의 세입위원회 및 상원의 세입위원회에 계속되는 회계연도동안 무역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부에 필요한 기금의 추정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부.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의회의 절차

제2191조.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 및 공산주의국가와의 상업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192조. 특정 행위를 불승인하는 결의안
제2193조. 1974년 무역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권한의 확대에 관한 결의안

제2194조. 의회절차에 관한 특별규칙

제2191조.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 및 공산주의국가와의 상업협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a) 하원 및 상원의 규칙

이 조 및 이 법 제2192조 및 제219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의회가 제정한다.

(1) 하원과 상원 각각의 규칙제정권한의 행사 및 각 원의 규칙의 일부로 인정됨에 의하여, 다만, 이 조 제b항 제1호의 규정에 명시한 이행법안, 이 조 제b항 제2호에 명시된 이행세입안, 이 조 제b항 제3호에 명시한 승인결의안 및 이 법 제2192조 제a항 및 제2193조 제a항에 명시된 결의안의 경우에는 각 원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절차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192조 및 제2193조의 규정은 다른 규정과 불합치하는 범위내에서만 기타 규칙에 갈음한다.

(2) 각 원의 다른 규칙과 동일한 방법 및 동일한 범위내에서 언제라도 (그 원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기 위하여 각 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함에 의하여

(b) 정 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이행법안"이라 함은 연방법전 제19편 제3572조 제c항 제3호의 규정 또는 1개 이상의 무역협정에 관하여 이 조 제c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소개된 의회의 어느 하나의 원의 법안만을 말하며, 이 법 제2112조의 규정, 연방법전 제19편 제3572조, 동편 제380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원과 상

원에 제출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A) 1개 이상의 무역협정 또는 협정의 확대를 승인하는 규정

(B) 1개 이상의 무역협정의 이행을 제안한 행정행위계획서를 승인한 규정

(C) 현행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제정법상 권한이 1개 이상의 무역협정 또는 그 확대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폐지 또는 수정이나 새로운 제정법상 권한의 규정과 같이 1개 이상의 무역협정 또는 그 확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

(2) "이행 세입안 또는 결의안"이라 함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개 이상의 세입조치를 포함한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을 말한다.

(3) "승인결의안"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결의한 후의 쟁점에 대한 의회의 상원과 하원의 공동결의안을 말한다. "의회는 XXXX에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XXXX의 제품에 관한 비차별적 대우의 확대를 승인한다." 첫 번째 공란에는 관계국가의 명칭을 기입하며 두 번째 공란에는 적당한 일자를 기입한다.

(c) 소개 및 회부

(1) 이 법 제2112조, 연방법전 제19편 제3572조, 동편 제3805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협정 또는 그 확대안을 상원과 하원에 제출한 날에 그 무역협정 또는 확대에 관한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안은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에 의하여 또는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지명한 하원의원에 의하여 하원에서 (요청에 의하여) 소개되어야 하며,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에 의하여 또는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지명한 상원의원에 의하여 상원에서 (요청에 의하여) 소개되어야 한다. 무역협정서 또는 그 확대안을 제출한

날이 상원이나 하원의 회기중이 아닌 경우에는 이행법안은 해당 원의 회기중 첫 번째 날에 전단에서 규정한 그 원에 소개되어야 한다. 이행법안은 적절한 위원회에 각각의 원의 의장에 의하여 회부되어야 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의 권한의 범위내에 있는 규정을 포함한 법안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동으로 회부되어야 한다.

(2) 1975년 1월 3일 이후 이 법 제4절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양자간 상업협정이 하원 및 상원에게 제출된 날에 그 협정에 관한 승인결의는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하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지명한 하원의원이 하원에서 (요청에 의하여) 소개하여야 하며,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상원의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가 지명한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요청에 의하여) 소개하여야 한다. 무역협정서가 제출된 날이 상원이나 하원의 회기중이 아닌 경우에 협정과 관련된 승인결의안은 해당 원의 회기중 첫 번째 날에 전단에서 규정한 그 원에 소개되어야 한다. 하원에서 소개된 승인결의안은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상원에 소개된 승인결의안은 상원의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d) 수정의 금지

이행법안에 대한 수정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수정은 하원 또는 상원에서 유효하지 아니하며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의 중지에 대한 신청은 하원 또는 상원의 어느 하나의 원에서도 유효하지 아니하며, 만장일치에 의한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의 중지에 대한 신청을 의장이 승인하는 것은 어느 원에서도 유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 위원회 및 의원의 심리 기간

(1)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이 회부되

었던 각 원의 1개 이상의 위원회가 소개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개 이상의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그 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적절한 의사일정표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행법안 또는 결의안의 최종통과에 대한 투표는 이행법안 또는 결의안이 회부된 해당 원의 1개 이상의 위원회가 보고한 후 15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전에 각 원에서 이행되거나 그 1개 이상의 위원회가 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리로부터 배제된 후 15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전에 각 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해당 원의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이 어떤 원에 의하여 통과되기 전에 다른 원으로부터 동일한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을 받은 경우에는

(A) 해당 원에서의 절차는 어떤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도 다른 원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B) 최종통과에 대한 투표는 다른 원의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상원에서 이행세입안 또는 결의안에 적용하지 못한다. 하원에서 받은 이행세입안 또는 결의안은 상원의 1개 이상의 적절한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 1개 이상의 위원회가 상원으로부터 이행세입안 또는 결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또는 나중의 날일 경우에는 상응하는 이행세입안 또는 결의안이 상원에 소개된 후 45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법안 또는 결의안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1개 이상의 위원회는 자동적으로 그 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의사일정표에 기입되어야 한다. 법안 또는 결의안을 회부받은 상원의 1개 이상의 위원회가 보고한 후 또는 그 1개 이상의 위원회가 법안 또는 결의안에 대한 다음 단계의 심리로부터 배제된 후 15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전에 상원에서 법안 또는 결의안의 최종통과에 대한 투표가 이행되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각 원에서 일자를 계산할 때 그 원이 회기중이 아니었던 날짜는 배제되어야 한다.

(f) 하원에서 의원의 심리

(1)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심리를 이행하기 위한 하원의 신청에는 상당한 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청에 대한 수정은 효력이 없으며 신청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하여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2)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하원의 논쟁은 2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법안 또는 결의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논쟁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신청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 신청은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을 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한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무효이다.

(3)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의 고려에 관하여 하원에서 행해진 연기신청, 다른 의사일정의 심리를 이행하기 위한 신청은 논쟁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4)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하원의 규칙 적용에 관한 의장의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은 논쟁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5) 이 항의 종전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의 심리는 유사한 상황에서의 기타 법안 및 결의안에 적용가능한 하원의 규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g) 상원에서 의원의 심리

(1)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상원에서의 신

청은 특권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논쟁대상이 아니다. 신청에 대한 수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하여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2)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논쟁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논쟁가능한 신청 및 이의신청은 2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시간은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들의 지명자들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그들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3)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과 관련된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상원에서의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법안 또는 결의안의 발의자 및 관리인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법안 또는 결의안의 관리인이 그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찬성하는 경우에 반대하는 측에 대한 시간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이행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통제하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은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 상원에게 추가시간을 더 할당할 수 있다.

(4) 논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상원에서의 신청은 논쟁대상이 아니다. 법안 또는 승인결의안에 대한 재의의 신청은 무효이다.

제2192조. 행위를 불승인하는 결의안

(a) 결의의 내용

(1) 이 조에서 "결의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말한다.

(A)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 이후의 쟁점에 대한 의회의 양원의 공동결의, "의회는 XXX에 의회에 제출된 1974년 무역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행위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공란에는 적절한 일자가 기입된다.

(B)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한 이후의 쟁점에 대한 의회의 양원의 공동결의, “의회는 XXX에 의회에 제출된 XXX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공란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입되고 두 번째 공란은 적절한 일자가 기입된다.

(2) 연방법전 제19편 제2437조 제c항 제2호의 규정에 명시된 결의의 경우에는 (제402조 제b항 또는 제409조 제b항과 함께 기입된 첫 번째 공란 및 관계국가의 명칭이 기입된 두 번째 공란과 함께) 제1호 (B)의 규정에 명시된 첫 번째 공란은 “XXX에 관하여 1974년 무역법 제XXX조에 의하여 제출된 대통령의 보고서”라는 문구와 함께 기입되어야 한다.

(b) 의원회에 회부

하원에 소개된 모든 결의안은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고 상원에 소개된 모든 결의안은 세입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c) 위원회의 배제

(1) 결의안을 회부받은 각 원의 위원회가 결의안의 소개 후 이 법 제2194조 제b항에 의하여 배제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한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의안의 심리에 대하여 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소개된 다른 결의안에 대한 심리에 대하여 위원회를 배제하려는 신청은 유효하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해당의원이 하원에 그의 의도를 통지하기 위한 신청을 한 달력상의 일자 이후의 두 번째 입법의 날에 배제신청이 행해진 경우

(B) 위원회가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결의안을 보고한 후에 그 배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제신청은 그 결의안에 찬성하는 개인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하원에서 그 신청에 대한 상당한 특권이 있으며 상원에도 특권이 있다. 그에 대한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그 결의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동등하게 하원에서 분배되어야 하며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간에 동등하게 상원에서 분배되어 통제되어야 한다.

(d) 하원에서 의원의 심리

(1) 결의안에 대한 심리를 이행하기 위한 하원의 신청에는 상당한 특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청에 대한 수정은 효력이 없으며 신청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하여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2) 결의안에 대한 하원의 논쟁은 2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결의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논쟁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신청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결의안의 재의 신청은 무효이다. 결의안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한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무효이다.

(3) 결의안의 심리에 관하여 하원에서 행해진 연기신청, 다른 의사일정의 심리를 이행하기 위한 신청은 논쟁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4) 결의안과 관련된 절차에 대한 하원의 규칙 적용에 관한 의장의 결정에 대한 모든 이의신청은 논쟁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5) 이 항의 종전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결의안의 심리는 유사한 상황에서의 기타 법안 및 결의안에 적용가능한 하원의 규칙에 의하

여 지배되어야 한다.

(e) 상원에서 의원의 고려

(1) 결의안에 대한 고려를 진행하기 위한 상원에서의 신청은 특권으로 부여되어 있다. 신청에 대한 수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에 동의하거나 비동의함에 의하여 투표를 재의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2) 결의안에 대한 상원에서의 논쟁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논쟁가능한 신청 및 이의신청은 2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결의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시간은 다수당 원내대표 및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들의 지명인들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그들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3) 결의안과 관련된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상원에서의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결의안의 발의자 및 관리인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결의안의 관리인이 그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찬성하는 경우에 반대하는 측에 대한 시간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결의안의 통과에 대한 통제하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은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의 심리 중에 상원에게 추가시간을 더 할당할 수 있다.

(4) 논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상원에서의 신청,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은 논쟁대상이 아니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재의의 신청은 무효이다.

(f) 상원에서의 절차

(1) 이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절차는 이 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결의에 대하여 상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A)
(ⅰ) (ⅱ)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상원이 받았을 때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를 위하여 상원의 세입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ⅱ)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받기 전에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소개된 경우에는 하원의 결의안은 상원에서 받았을 때 의사일정표에 기입되어야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과 동일한 쟁점을 포함한 상원에서 소개된 결의안에 관한 상원에서의 절차는 어떤 결의안도 하원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상원에서의 통과에 관한 투표는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B) 동일한 쟁점을 포함한 공동결의안을 하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우에는 하원으로부터 공동결의안을 받을 때까지 그 공동결의안을 데스크에 두어야 한다. 하원으로부터 공동결의안을 수령한 때 그 공동결의안은 두 번 낭독되어 심리되고 세 번 낭독되어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조에서 명시된 공동결의안의 원문 또는 이 법 제2193조 제a항의 규정 중 적절한 것이 어떤 쟁점과 관련하여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상원은 상원에 소개된 결의안의 통과에 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B) 상원에 의하여 통과된 공동결의안의 원문은 통과 후 지체없이 (또는 그 이후에는 하원에 의하여 통과된 공동결의안을 수령한 후) 하원에 의하여 통과된 공동결의안의 원문을 갈음하여야 하며 그 결의안은 수정된 채로 양원간 협의를 위한 요청과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

(3) 이 조 제a항 제2호 (B)의 규정 또는 이 법 제2193조 제a항의 규정에 명시한 공동결의안에 관한 거부에 대한 상원의 고려는 공동결의안과 관련된 모든 논쟁 가능한 신청 및 이의신청의 심리를 포함하여 1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다수정당의 원내대표 및 소수정당의 원내대표 또는 그들의 지명인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 통제되어야 한다.

제2193조. 1974년 무역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한 포기권한의 확대에 관한 결의안

(a) 결의안의 내용

이 조의 규정에서 "결의안"이라 함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결의한 후의 쟁점에 대한 의회의 양원의 공동결의안만을 말한다. "의회는 XXX에 XXX에 관하여 대통령이 의회에 권고한 1974년 무역법 제402조 제c항에 포함된 권한의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권한의 확대에 대하여 승인되지 않았음과 관련하여 그리고 권한의 확대가 어떤 국가에 대하여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에 대하여"로 시작하는 문구를 생략된 채 첫 번째 공란에는 적절한 일자를 기입하며 두번째 공란에는 해당 국가의 명칭을 기입한다.

(b) 이 법 제2192조의 규칙의 적용, 예외

(1) 이 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2192조의 규정을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결의안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법 제2192조 제c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모든 달력상의 일자가 계산되어야 한다.

(3) 어떤 수정안도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한 이 법 제2192조 제d항 제2호의 규정의 일부를 1개 이상의 국가의 명칭을 삭제하거나 삽입 또는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에 관한 하원에서의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에 관한 논쟁의 제한을 촉진하기 위한 하원에서의 신청은 논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어떤 수정안도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한 이 법 제2192조 제e항 제4호의 규정의 일부를 1개 이상의 국가의 명칭을 삭제하거나 삽입 또는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삽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적용하지 못한다. 이 법 제2192조 제e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원에서의 결의안에 관한 시간제한은 결의안에 대한 모든 수정안을 포함한다. 결의안에 대한 수정에 관한 상원에서의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결의안의 제안자 및 관리인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결의안의 관리인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경우에 반대하는 측의 시간은 다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다수당 원내대표와 소수당 원내대표는 결의안의 통과에 관한 통제하에 있는 시간에서 수정안을 심리하는 중에 상원에게 추가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상원에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한 논쟁의 제한을 촉진하기 위한 신청은 논쟁대상이 아니다.

(c) 두 번째 결의안의 심리는 무효

어떤 원이 동일한 권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경우에 (다른 원으로부터 받은 이 조 제a항에서 명시한 결의안 이외의) 이 법 제2432조 제d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고에 관하여 상원이나 하원에서 결의안을 심리하는 것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d) 상원에서의 회의 보고서에 관한 절차

(1) 논쟁중인 모든 수정안에 대한 심리를 포함하여 상원에서 이 조 제a항에 명시된 공동결의안에 관한 회의 보고서의 심리 및 그것과 관련된 모든 논쟁가능한 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는 1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다

수당 원내총무와 소수당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통제되어야 한다. 회의 보고서와 관련된 논쟁가능한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논쟁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회의 보고서의 제출자 및 관리인간에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통제되어야 한다.

(2) 논쟁중인 수정안의 경우에 각 수정안에 관한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회의 보고서의 관리인 및 소수당의 원내대표 또는 그의 지명인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제2194조. 의회절차에 관한 특별 규칙

(a) 양원에 대한 문서의 제출

제2112조 제e항, 제2253조 제b항, 제2432조 제d항, 제2437조 제a항 또는 제b항에 따라 문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 문서의 사본은 동일한 날에 의회의 양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하원이 회기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원의 사무총장에게, 상원이 회기중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원의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b) 90일의 기간의 계산

이 법 제2253조 제c항 및 제2437조 제c항 제2호의 목적을 위하여 동조에서 명시한 90일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한다.

(1) 상원이나 하원이 무기한 의회의 휴회 또는 3일이상의 휴회로 인하여 회기중에 있지 아니한 날

(2) 상원이나 하원이 회기중에 있지 아니한 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지 아니한 토요일 및 일요일

제6부. 의회의 보고서

제2211조.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
제2212조. 의회에 협정서의 제출
제2213조. 보고서

제2211조. 무역정책 및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

(a) 선 임

(1) 의회의 각 정기 회기부터 하원의 대변인은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위원회의 (동일한 정당의 당원이 3명 이하가 되도록) 5명의 의원을 5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원의장대행은 상원의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으로 그 위원회의 (동일한 정당의 당원이 3명 이하가 되도록) 5명의 의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무역정책과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그들은 무역정책의 발전 및 무역정책의 이행에 관한 우선권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무역협정에 관한 국제회의, 회의, 협상회의에서 미국대표의 공식적 고문으로서 대통령을 대표하여 미국의 무역대표가 파견하여야 한다.

(2)
(A) 하원의 세입위원회 및 상원의 세입위원회로부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고문 이외에

(ⅰ) 하원의 대변인은 특별무역정책쟁점 또는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으로서 임명하기 위하여 쟁점 또는 협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의회의 합동위원회 또는 하원의 기타 위원회로부터 하원의 추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ii) 상원의 대변인은 특별무역정책쟁점 또는 협상에 관한 의회의 고문으로서 임명하기 위하여 쟁점 또는 협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가진 의회의 합동위원회 또는 상원의 기타 위원회로부터 상원의 추가의원을 선임할 수 있다.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고문으로서 선임된 하원과 상원의 의원은 미국무역대표에 의하여 파견되어야 한다.

(B) 제(A)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의원을 지명하기 전에 하원의 대변인 또는 상원의장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i) 하원과 상원의 세입위원회의 위원장 및 최고위의원

(ii) 의원이 선임된 위원회의 위원장 및 최고위 소수위원

(C) (동일한 정당의 당원은 2인 이하인) 3인 이하의 의원이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원회로부터 고문으로서 선임될 수 있다.

(b) 브리핑

(1) 미국무역대표는 미국무역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 및 협정의 가능성, 협상목표, 진행중인 협상의 상태, 무역협정의 요건·무역협정에 대한 수정안·무역협정에 의한 권고 또는 무역협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에 권고될 수 있은 국내법 변경의 성질 또는 국내법의 집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지하는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공식 고문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미국무역대표는 고문의 지명과 관련된 무역정책 쟁점 및 협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지된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각각의 공식 고문을 보유하여야 한다.

(3)
(A) 하원의 세입위원회 및 상원의 세입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식적 고문 이외의) 의원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식 고문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각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다.

(B)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공식 고문으로부터 의회의 합동위원회 또는 하원이나 상원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식고문에게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지명할 수 있다.

(c) 위원회의 협의

미국무역대표는 하원의 세입위원회, 상원의 세입위원회, 미국의 전체적 무역정책의 발전, 이행, 운영에 관한 하원과 상원의 기타 적절한 위원회와 지속적인 근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그 협의에는 무역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다자간 및 양자간 협상 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해진 진행상태

(2)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 및 다자간 무역협정 및 무역분쟁해결의 이행, 운영, 효과

(3) 미국의 무역법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제안된 행위 및 행해진 행위와 무역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행위의 효과 또는 예상되는 효과

(4) 적절한 정책 반응이 발전되어야 하는 기타 무역부문에서의 중요한 발전 및 쟁점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쟁점을 심사하기 위한 총회에서 각 위원회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212조. 의회에 협정서의 제출

(a) 사본의 및 이유서의 제출

이 법 제2133조 또는 제2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무역협정 후에 지체없이, 미국과 관련하여 발효된 이 법 제38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종전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제2151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무역위원회의 자문을 고려하여 표명서와 함께 의회의 각 원에 무역협정서의 사본, 기타 관련 고려사항, 협정을 체결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각 의원에 대한 제출

대통령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의 요약서를 의회의 각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의원"은 준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푸에르트리코 대표를 포함한다.

제2213조. 보고서

(a) 무역협정프로그램 및 국내무역정책의제에 관한 연차보고서

(1) 대통령은 각 역년동안 (다만, 그 해의 3월 1일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A) 무역협정프로그램의 운영 및 종전 역년 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조정지원 및 수입구제의 규정

(B) 보고서가 제출된 해의 국내무역정책의제

(2) 보고서는 제1호, (A)의 규정에 명시된 쟁점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새로운 무역협상

(B) 미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 및 기타 무역왜곡상태에서 행해진 변경

(C) 취득한 상호 양허

(D) (수입구제 및 그로 인한 보상을 위한 행위의 결합을 포함하여) 무역협정의 변경

(E) 외국의 상품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비차별적 대우의 확대 또는 철회

(F) 개발도상국의 특혜대우의 확대, 변경, 철회, 중지, 제한

(G) 미국 수출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포함하여) 해외무역제한을 제거할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의 결과 및 (운송업 및 여행업을 포함하여) 미국의 서비스 산업 및 투자에 대한 차별적인 외국관행의 제거를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의 결과

(H) 기타 중요한 해외수입제한의 제거를 구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I) 이 법 제2171조 제d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각 회부 및 그 회부와 관련하여 취해진 행위

(J) 기타 무역협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 및 체결된 무역협정에 관련된 정보

(K) 근로자 및 회사에 관한 조정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수, 승인된

신청서의 수, 조정지원이 승인된 신청에 의하여 제공되었던 범위

(3)
(A) 보고서가 제출된 해의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내무역정책의제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형태이어야 한다.

(ⅰ) 해당 연도 중에 미국의 무역정책목표 및 우선권과 그 이유

(ⅱ) 무역법 및 외국과의 협상에 의하여 권한을 가진 행위를 포함한 협상목표 및 우선권을 성취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중에 책임이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예상된 행위

(ⅲ) 협상목표 또는 우선권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제안된 입법

(ⅳ) 이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 중에 제공된 표명서에 포함된 무역정책목표 및 우선권을 성취하기 위하여 종전 해 중에 행해졌던 과정

(B) 대통령이 은밀하게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통령은 (A)의 규정에 명시된 비밀로 받은 정보를 의회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C) 어떤 해 중에 국내무역정책의제를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은 이 법 제2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적절한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D) 미국무역대표(이하, 이 조에서는 “무역대표”라 한다) 및 기타 미국정부의 적절한 공직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각 국내무역정책의제에 기재된 연차목표 및 우선권에 관한 의회의 적절한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ⅰ) 협상목표 및 우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책임을 부담했던 행위의 결과 및 상태

(ⅱ) 협상목표와 우선권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로 인한 결과의 발전

(b) 연차무역예측보고서

(1) 미국의 대외무역장벽과 무역수지에 관한 거시경제학적 요인의 영향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무역대표 및 재무장관은 상원의 세입위원회 및 하원의 세입위원회(이하, 이 항에서는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각 해의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의 적절한 분류를 포함하여 그 국가의 다음 사항에 관한 분석 및 검토

(ⅰ) 상품무역수지

(ⅱ) 재화 및 서비스 무역수지

(ⅲ) 경상계정수지

(ⅳ) 대외채권

(ⅴ) 환율

(ⅵ) 경제성장률

(ⅶ) 재정예산상의 적자 또는 흑자

(viii) 미국 무역시장장벽 및 기타 불공정한 관행에 관한 효과

(B) 보고서가 제출된 해와 그 다음해 중에 (A)의 규정에 명시된 국가의 그룹 및 각 국가에 관하여 ((ⅴ)의 규정 및 (viii)의 규정에서 명시한 것 이외에) (A)의 규정에 명시된 각 경제적 요인의 예측

(C) 무역정책, 환율 정책, 재정정책 및 예측 발전을 위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기타 정책을 포함하여 정책변경에 관하여 (B)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예측에 기초한 결론 및 권고

(2) 제1호 (A), (B), (C)의 규정에 명시된 대상이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내무역정책의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무역대표 및 재무장관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그 보고서에 정보, 분석, 결론에 대하여 적절히 기록할 수 있다.

(3) 무역대표 및 재무장관은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각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무역대표 및 재무장관은 그들이 비밀보장의 적절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비밀로 위원회에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정보, 분석, 결론을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각 보고서의 제출 후에 무역대표 및 재무장관은 보고서와 관련하여 각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c)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년에 한번이상 무역협정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실적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제2231조. 명칭의 변경
제2232조. 독립예산 및 지출권한

제2231조. 명칭의 변경

(a) 미국 관세위원회

(연방법전 제19편 제13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국 관세위원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 변경되었다.

(b) 법률 및 기타 문서상 규정

미국 관세위원회 (또는 관세위원회)에 대한 미국 법률상 규정 또는 기타 명령, 규칙, 규정, 기타 문서상의 규정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232조. 독립예산 및 지출권한

연방법전 제31편 제11장의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1976년 10월 1일부터 개시된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위한 제안된 지출안 및 추정지출안은 각 회계연도 개시 전해의 10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되어 수정없이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제11장의 목적을 위한 성립 또는 부서가 되도록 간주되지 못한다.

제8부. 시장 장벽 및 불공정 무역행위의 확인

제2241조.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의 평가
제2242조.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의 확인

제2241조.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의 평가

(a) 국내무역평가

(1) 총 칙

1988년 및 각각의 다음의 해 중에 미국무역대표는 제19편 제1872조 제a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각 관계부처간 무역기구를 통하여 이 법 제2171조 제d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관계부처간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얻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다음 사항에 대한 중요한 장벽 또는 왜곡상태를 구성하는 각 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의 확인 및 분석

(ⅰ) 미국의 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 (농업상품 및 미국인이 허가하거나 수출한 상표, 특허, 저작권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ⅱ) 특히, 투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미국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ⅲ) 미국의 전자상거래

(B) (A)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미국통상의 행위, 정책, 관행에 관한 무역왜곡효과의 평가 이행

(C) 해당국가의 각 행위, 정책,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년 중에 각각의 외국과 거래하거나 외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했었던 다음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한 실행가능한 평가 이행

(ⅰ) 미국의 추가적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

(ⅱ) 미국인의 추가적 해외직접투자의 가치

(ⅲ) 미국의 추가적 전자상거래의 가치

(2) 분석 및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석 또는 평가를 할 때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미국 통상에 관한 행위, 정책, 관행의 상대적 효과

(B) 미국 통상에 관한 행위, 정책, 관행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기타 쟁점, 시장점유율, 문서상 가격에 대한 정보의 이용가능성

(C) 미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의 대상이 되는 미국 통상에 관한 행위, 정책, 관행의 범위

(D) 이 법 제2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적절한 위원회를 통하여 제공된 자문

(E) 제1호 (C)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해 동안에 외국에서의 다음에 해당하는 가치의 실질적 증가

(ⅰ) 외국에 수출하는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

(ii) 외국에서 행한 해외직접투자의 가치

(iii) 외국과 거래한 전자상거래의 가치

(3) 연차수정 및 갱신

무역대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마다 분석 및 평가를 수정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b) 보고서

(1) 총 칙

1989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과 각 다음 해의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무역대표는 해당 연도 이전의 해 중에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행해진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국내무역평가"로 알려진) 보고서를 대통령, 상원의 세입위원회 및 하원의 적절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행위, 정책, 관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위 (또는 행위가 취해지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정보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각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이 법 제24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B) 외국정부와의 협상 또는 협의

(C) 외국의 반경쟁적 관행, 미국재화 또는 서비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용인되는 부문

(3) 무역정책우선권에 관하여 의회와의 협의

무역대표는 시장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무역정책우선권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1호의 규정에 명시된 위원회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의 제출 후에 무역대표는 보고서에 명시된 해외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제1호에서 명시한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위원회의 견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 제24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개시의 가능성 또는 기타 무역행위를 포함한다.

(c) 기타 기관의 지원

(1) 정보의 제공

독립기관을 포함하여 정부의 행정부의 각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무역대표 또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요청에 의하여 데이터, 보고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대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이 조 제b항 제2호 (C)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역대표는 법무장관과 특별히 협의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

이 항의 규정은 그에 따라 성립된 법률 또는 절차나 불합치하는 방법으로 무역대표에 의한 정보의 사용 또는 무역대표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원 및 서비스

미국의 부처, 기관, 또는 중개기관의 장은 그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무역대표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환 여부를 불문하고 제공할 수 있다.

(d) 전자상거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과세금지법[3] 제1104조 제3호의 규정에서 정의한 의미를 가진다.

제2242조. 지적재산권을 위한 적절한 보호 또는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국가의 확인

(a) 총 칙

이 법 제2241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원회에 연차보고서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미국무역대표는 (이하, 이 조에서는 "무역대표"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

(A)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거부

(B) 지적재산보호에 의존한 미국인에 대한 공정 및 공평한 시장접근의 거부

(2) 무역대표에 의하여 최우선협상대상국으로 결정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국가

(b) 확인을 위한 특별규칙

3) "인터넷과세금지법"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신규조세 및 차별적 조세를 3년간 유예하고 기존의 원격판매에 적용되는 과세원칙을 인터넷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한 1998년에 제정된 법이다.

(1)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선협상대상국을 확인한 경우에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국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다음에 해당하는 가장 부담스럽고 터무니없는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을 가진 국가

(ⅰ)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재산권의 거부

(ⅱ) 지적재산보호에 의존하는 미국인에 대한 공정 및 공평한 시장접근의 거부

(B) 관련미국상품에 대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가장 큰 역효과를 미치는 (A)의 규정에 명시된 행위, 정책, 관행을 가진 국가

(C)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ⅰ) 선의의 협상 체결

(ⅱ)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서 중요한 절차의 이행,

(2)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우선협상대상국을 확인하는 경우에 무역대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지적재산에 관하여는 상무장관, 미국특허상표국의 국장, 기타 연방정부의 적절한 공직자에 의하여 저작권의 등록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이 법 제2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 및 이 법 제2241조 제b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 무역대표에게 제출한 정보 및 무역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부터의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무역대표가 국제법 또는 국제협정의 위반의 결과로 인한 공정 및 공평한 시장접근의 거부 또는 이 조 제d항 제3호의 규정에 명시한 무역장벽의 존재에 관한 실질적 근거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역대표는 이 조 제a항 제1호 (B)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를 확인할 수 있다.

(4) 이 조 제a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를 확인하는 경우에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 확인을 포함한 외국의 지적재산법 및 관행의 역사

(B)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성취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성과의 연혁 및 외국의 반응

(c) 취소 및 추가적 지정

(1) 무역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해당행위의 적절성을 나타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A)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선협상대상국인 국가의 지정을 취소

(B)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선협상대상국인 국가의 지정

(2) 무역대표는 이 법 제24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연 2회의 보고서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우선협상대상국인 국가의 지정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d) 정 의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 “지적재산보호에 기초한 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를 말한다.

(A) 저작권을 취득한 (연방법전 제17편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저술작품의 창작, 저작, 특허

(B) 특허과정에 있거나 특허받은 상품의 제작

(2) 어떤 국가가 특허, 과정특허, 등록된 상표, 저작권 및 마스크 업무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 행사, 실행하기 위한 해당국가의 법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해당국가의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거부한 경우에는 그 국가는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한다.

(3) 어떤 국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정, 관행, 절차, 법의 사용에 의하여 특허, 상표, 마스크 업무, 무역비밀, 식물재배자의 권리와 관련되거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에 관한 시장접근을 효과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그 국가는 공정 및 공평한 시장접근을 거부한다.

(A) 미국과 해당국가가 당사자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 규정의 위반

(B) 차별적 비관세무역장벽의 구성

(4) 어떤 국가는 연방법전 제19편 제3511조 제d항 제15호에 명시된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에 관한 협정의 특별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의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e) 공 고

무역대표는 이 조 제a항에 의하여 확인된 국가의 목록을 연방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조 제c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유서에 의하여 필요한 목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f) 미국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한 특별규칙

(1) 총 칙

이 법 제2241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위원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한 후로부터 30일내에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캐나다의 행위, 정책, 관행을 확인하여야 한다.

(A) 문화산업에 영향을 미침

(B) 1992년 12월 17일 이후에 채택되거나 확대됨

(C) 북미자유무역협정 제210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가능성

(2) 확인을 위한 특별규칙

이 법 제2412조 제b항 제2호 (A)의 규정을 목적으로 이 항에 의하여 확인된 행위, 정책, 관행은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국가의 확인을 위한 기초가 되는 행위, 정책, 관행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다만, 미국이 그 행위, 정책, 관행에 상응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 제2106조에 따라 행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정책, 관행의 확인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무역대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관련국내산업의 대표, 이 법 제2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적절한 위원회 및 연방정부의 적절한 공직자와 협의하고 그 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야 한다.

(B) 이 법 제2241조 제b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포함하여 무역대표가 이용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부터의 정보 및 이해관계인이 무역대표에게 제출한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문화 산업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중의 하나에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A) 인쇄 또는 기계판독에 의한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또는 신문의 판매, 출판, 배급, 다만,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신문 중 어느 하나의 인쇄 또는 활자조판의 단독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B) 필름 또는 비디오 녹화의 제작, 배급, 판매, 전시

(C) 오디오 또는 비디오 음악 녹음의 제작, 배급, 판매, 전시

(D) 인쇄 또는 기계판독에 의하여 음악의 발표, 배급, 판매

(E) 일반인의 직접적 송신을 위한 라디오 전송 및 모든 라디오, TV, 케이블 방송사업과 모든 위성방송 프로그램편성, 방송네트워크서비스

(g) 연차보고서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국가가 확인되기 전에 무역대표는 이전 12개월 중에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해진 행위에 관한 보고서 및 행위에 관한 이유서를 상원과 하원의 세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해진 과정 및 지적재산권에 기초

한 자를 위한 시장접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